

전략물자와항공우주산업

-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세계로 쏘아 올리기 위한 발판, 전략물자관리제도! -

전략물자관리원

지난 4월 8일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와 러시아 우주인 두 명을 태운 러시아 유인우주선 소유스호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성공리에 발사됐다. 이날 전 국민이 전파 방송을 통해 이 광경에 주목하였고, 모든 방송과 언론들은 한국인을 우주로 보낸다는 자부심에 들뜬 모습이었다. 이번 이소연씨의 우주 탐사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이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희망을 확인하고 항공우주산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이제 한국도 항공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무한한 개발 영역인 우주산업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입증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올 12월 국내 첫 한국형우주발사체(KSLV-I)를 발사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로켓 상단부의 핵심 구성품들을 국내 자력으로 설계 제작해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발표해 다시 한 번 국내 항공우주기술 개발에 청신호를 밝혔다. 한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 항공 산업 시장도 최근에는 산업 활동의 점진적 증가로 긍정적 신호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수급규모가 49억불에 달했고, 총 생산규모도 2006년에 비해 22.6% 증가하였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은 그 분야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개발의 차세대 新성장동력사업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항공우주산업이 기계, 자동차, 조선산업 등 다른 산업의 기술 파급 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용인력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라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 항공레저, 항공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항공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일본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경쟁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향후 세계시장에서 진정한 항공우주

개발의 주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키울 뿐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항공우주개발 및 안전한 교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운반체계인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UAV)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물자 및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다자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원국들을 위주로 한 국제사회가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이 모든 UN 회원국들에 수출통제의 의무를 부여한 UN결의안 1540호를 통해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로 구체화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진 무역의 반열에 합류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다.

〈표 1〉 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

구분	바세나르 체제 (WA)	핵공급그룹 (NS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설립	1996	1978	1987	1985
회원국	40개국	45개국	34개국	41개국
우리나라 가입	1996	1995	2001	1996
통제대상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원자력전용물자 및 이중용도품목	미사일, 무인항공기 및 관련물품	생화학무기 및 관련물품

1. 전략물자관리제도로 국제 사회의 신뢰 확보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운반체계 및 대량 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 및 기술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4대 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을 반영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모든 품목 및 기술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물자는 상업적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개발·제조되므로 이러한 위협적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용도의 산업물자 중에서도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 많으며 그 영역도 다양하다. 실제로도 테러국이나 테러단체들은 대량파괴무기 등을 개발·제조하기 위해 상당부분 상업적 거래를 가장해 전략물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물자 전용에 있어 항공우주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구성과 기능은 거의 흡사하다. 인공위성을 탑재하면 순수 민간용이지만 핵무기를 탑재하면 탄도미사일로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도 농약 살포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살포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민간 항공기 항법을 위한 자이로칩 역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전략물자가 될 수 있다. 전략물자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우려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는 군용 및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를 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현재 항공우주분야의 전략물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와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MTCR은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와 같이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운반하는 그 운반체계를 통제한다. 그리고 바세나르체제(WA)에서는 재래식 무기 및 그 개발, 제조, 사용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확산과 축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항공분야에서는 크게 항공전자와 항공기계(항공우주 및 추진)로 구분하여 통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체제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및 통일부 등 4개 기관에서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 방위사업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일반 이중용도 품목은 대외무역법에서, 군용은 방위사업법, 전략기술은 기술개발촉진법, 대북 반출물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에서 각각 통제를 하고 있다.

〈표 2〉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구 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물 품 및 소프트웨어	지식경제부	일반 산업용 품목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전용품목
	방위사업청	방산물재(주요방산물재)
기 술	지식경제부	전략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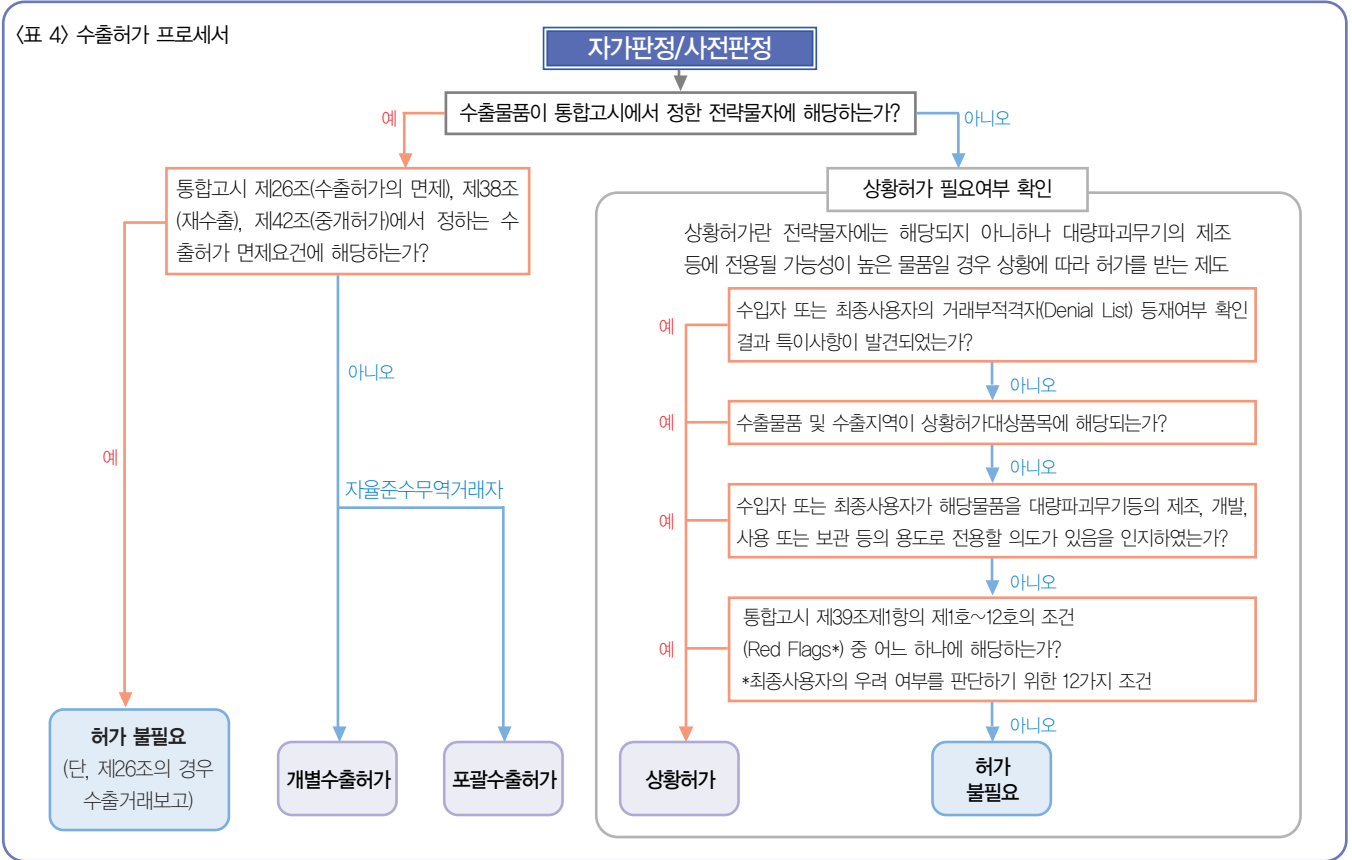
물품 등을 제조·수입·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략물자를 수출하

는 자는 해당품목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가판정이나 사전판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가판정은 말 그대로 업체 스스로가 통제품목 리스트를 근거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사전판정은 전문가(물품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 기술의 경우 전략기술종합정보센터)에게 판정을 의뢰하는 것이다. 전략물자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여부, 최종사용자의 적합성, WMD 전용 가능성 여부 등을 따져서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캐치올 제도(Catch-all, 상황허가)라 한다. 해당 기관에서의 수출허가 심사는 신청 품목의 판정 정확성, 수출대상 국가나 업체의 안전성, 최종사용자의 적합성 등의 분석과정을 거친다. 수출허가심사는 통상 1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최종사용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경우는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출통제=수출금지'라는 잘못된 공식인데, 지식경제부 수출허가심사의 높은 승인율(약95%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 전략물자라도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전략물자관리제도는 무역 장벽이 아닌, 기업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 거래시 신용을 확보하도록 보험의 역할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전략물자관리제도 개요

구 분	전략물자관리제도
확인 신고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신고 : 전략물자 수입 시 품목별로 최초 1회 신고 통보 : 전략물자 국내 거래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수출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의 :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지역구분 없이 허가 신청 종류 : 개별수출허가(1년), 포괄수출허가(1~3년)
상황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의 : 전략물자는 아니나 WMD전용 가능품목 중 전용의도를 인지했거나 전용이 의심되는 경우
별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확산 목적으로 허가없이 수출/수출하려 한 자 : 징역7년, 5배벌금 허가없이 수출/수출하려 한 자 : 징역5년, 3배벌금 확인/신고/통보/서류보관 의무 위반자 : 1천만원이내 과태료 허가없이 수출, 질서위반자 : 3년이내의 무역제한 확인 의무 위반자 : 과태료 이외에 교육명령 병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보관 의무 : 확인, 신고, 통보, 각종 허가 관련서류 보관(5년간) 중개허가 :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할 때 허가신청

<표 4> 수출허가 프로세스



2.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전략물자관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구축하여 기업과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전략물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한국 무역(Trade)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Yes)로 YesTrade라 불린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기업들이 더 손쉽게 전략물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위함이며 전략물자 판정, 허가뿐만 아니라 통일부와 방위사업청과도 연계해 소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 등 다양한 자료를 열람해 볼 수 있으며, FAQ를 통해 전략물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동영상이나 뉴스레터 등 교육자료를 통해 중요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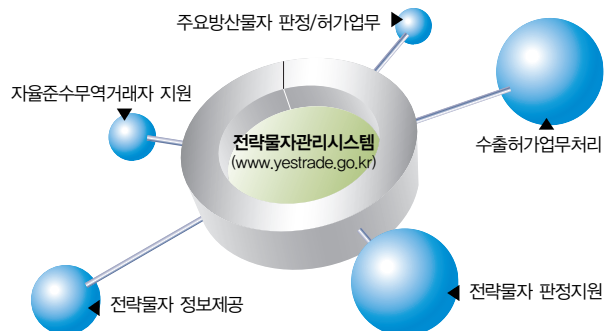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자율적이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같이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준수하는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결실이 바로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이다.

한국은 2005년에야 최초로 CP를 도입하였으나,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기업을 보호해주는 리스크관리제도로 중시하고 있어 중견이상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의 CP도입은 당연시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08. 5. 기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39개사가 CP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은 4,000여개, 일본은 1,300여개 업체가 CP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EU국가(영국, 독

<표 5>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요

전략물자 정보 포탈	체계적인 종합정보 제공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온라인 서비스
전략물자 신고	전략물자 신고의무 지원
전략물자 수출허가	온라인상 실시간 One-Stop 처리
전략물자 기타민원 업무	거래보고, 수입목적확인서 등 민원업무
유관시스템 연계	관세청, 통일부 연계 및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일 등)는 중견기업 이상 대부분이 CP에 가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CP란 바로 무역거래자가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이다. CP업체로 지정되면 스스로 수출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대신 정부는 전략물자를 자율 통제하는 CP업체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어 우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선적 적기 실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율준수제도는 '기업의 자율성 제고'와 '정부의 효율적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 기업과 정부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사항

구 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규정
포괄수출허가	전략물자 개별 수출물품마다 사전수출허가를 받는 대신, 최대 2년까지 별도의 수출허가 없이 신속하게 수출 가능
허가신청 간소화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 첨부서류 중 상당부분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 가능
행정제재 경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법규 위반시 고의가 아닐 경우, 행정제재 경감 가능

4.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과 수출통제

그렇다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서 수출이 제한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33번째로 MTCR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외국의 부품과 기술 도입이 쉬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에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부분을 항공선진국의 기술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특히나 대다수의 항공우주 부품 및 기술은 E/L(Export License, 수출허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상대국가의 수출통제 준수 여부나 해당 기업의 신뢰성은 기술도입에 있어 그 여부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국내 모 CP기업은 자율준수체제(CP)가 신규 사업 파트너를 발굴할 때 매우 유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점진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업체들에게 CP도입을 적극

〈표 7〉 항공우주관련 불법수출 사례

기업 및 개인	내용	처벌 사항
보잉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소형 칩이 부착된 민간 항공기를 무허가로 판매하여 무기 수출통제법(AECA)을 위반	1,5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아마하	이중용도 무인 헬리콥터(RMAX L181)를 허가없이 중국으로 수출	백만엔(약 850만원)의 벌금을 부과
개인	영국인 Mehrdad Salashoor은 미사일 유도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는 첨단 항법장비인 자이로컴퍼스(Gyrocompass)를 이란 국방부에 불법수출	징역 18개월 선고 및 432,970 파운드 상당의 재산몰수 명령 발부

권장하는 바이다.

수출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우리의 항공우주 제품과 기술은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에 당장의 이익도 기업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수출 후 테러단체나 적법치 못한 최종사용자에게 물건이 넘어간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여부를 위협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사의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무한히 뻗어나가는 성장 사업에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로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이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분야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항공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해외 기술이전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는 매년 통제품목을 개정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품목과 기술의 통제 수위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항공선진국 G-8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도 우리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함과 동시에 이의 선결조건으로 수출통제제도 준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

– Contact Point –

-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정책, 수출허가) : 02-2110-5341~2
- 전략물자관리원(사전판정, YesTrade) : 02-6000-6400
- ※ 전략물자관리제도에 관한 교육자료나 홍보자료가 필요하시면 전략물자관리원(담당자 : 02-6000-64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